



제 안 설 명

-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령 군
(도 시 과)

도시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해 수평투영면적은 지붕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공작물의 높이를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붕 난간 또는 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인한 일조·경관 등 주변 환경 피해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그 사용량에 적합한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토지 및 경관훼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그 밖에도 일부 형식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일
도시과장 유원호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도시과장)
제출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관계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개정(안 제20조의5 제4항)

-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지붕면적의 2분의 1 초과설치 제한 단서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인한 일조·통풍·경관 및 안전 등 주변 환경 피해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허가기준 개정

나. 자가소비용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명확화를 위한 단서 신설(안 제20조의5제2항)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토지 및 경관훼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다. 그 밖에 일부 형식상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정비(안 제20조의5제1항)

3. 개정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5. 1. 6. ~ 2025. 1. 27. (특이사항 없음)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2025. 2. 4. 원안 통과

바. 기타 관련사항 : 해당없음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시설”을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 (3)에 따라 발전시설”로, “토지 이용 현황”을 “토지이용현황”으로,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로법」에 의한”을 “「도로법」에 따른”으로, “2차선이상 포장도로”를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지역의”를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으로, “아니 할”을 “아니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를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 사용량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붕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2.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축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5(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① <u>발전시설 설치</u>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지형으로 인하여 도로나 주거밀집지역, 관광지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u>아니한다</u>.)</p> <p>1.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2차선이상 포장도로(도,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부터 500미터</p> <p>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미터(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의 <u>주거지역</u>의 경우 직선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u>아니 할 것</u>)</p> <p>3. (생 략)</p> <p>4. 평균경사도가 15도 초과인 토지(평균경사도 <u>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u>.)</p> <p>5. (생 략)</p> <p>②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u></p>	<p>제20조의5(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① <u>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 (3)에 따라 발전시설</u> ----- <u>토지이용현황</u>----- ----- ----- ----- ----- ----- <u>아니한</u> <u>다</u>)</p> <p>1. 「도로법」에 따른 ----- <u>왕복 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u>----- ----- -----</p> <p>2. ----- ----- ----- <u>주민이</u> <u>거주하는 지역인</u> ----- ----- <u>아니할</u> -----</p> <p>3. (현행과 같음)</p> <p>4. ----- ----- <u>측정방법은</u> <u>「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u>----- -----</p> <p>5.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p>

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삭 제

④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축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정)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한다. (단,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은 지붕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⑤ (생 략)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 사용량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붕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2.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축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 시 과	
연 락 처	054-950-6705